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유의사항

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종류

1) 스태프 관련

- 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작가 관련

- 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준용)
- 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준용)

3)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 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수)
- 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배우)

4) 방송프로그램 관련

- 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나)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나. 방송분야 제작지원사업 표준계약서 사용점점 범위

: 스태프, 작가,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총 5종의 표준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 부문은 제작하는 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다. 형태 별 표준계약서 설명

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회사(제작사) 대 개인 간 계약으로, 회사가 직접 고용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인력과 체결하는 계약서(정규, 계약직)
- 참고1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여기에서 종속적 관계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참고2 : 고용부 방송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근로감독 결과(2018) : 스태프 177명 중 157명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감독·제작PD 등 일부 스태프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성 부인· 2차 근로감독 결과(2019) : 스태프 184명 중 137명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팀장급은 스스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 부인 |
|---|

2)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회사(제작사) 대 개인 간 계약으로, 회사가 프로젝트(방송프로그램 제작)를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인력과 체결하는 계약서
- 프리랜서 스태프에 해당되며, 주로 감독급 스태프에 해당함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회사(제작사) 대 회사(하도급 업체) 간 계약으로, 회사가 프로젝트(방송프로그램 제작)를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
- 미술, CG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세분화된 전문 분야를 다루는 사업자(법인, 개인) 형태의 스태프 집단(팀)에 해당함

4)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회사(제작사) 대 개인 간 계약으로, 회사가 프로젝트(방송프로그램 집필)를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인력과 체결하는 계약서
- 독자적인 집필활동을 하는 프리랜서 작가에 해당되며, 주로 메인급 작가에 해당함
- 직접 집필이 아닌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작가의 경우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준용 필요

5)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수, 배우)

- 회사(제작사) 대 개인 간 계약으로, 회사가 프로젝트(방송프로그램 출연)를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인력과 체결하는 계약서
- 프리랜서 가수나 배우에 해당함

라. 표준계약서 형태별 사업비 편성 안내(국고편성지침)

1)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인건비 목 -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세목 -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세세목

2)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전문가활용비 세세목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운영비 목 - 일반용역비 세목 - 일반용역비 세세목

4)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전문가활용비 세세목

5)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수, 배우)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전문가활용비 세세목

마. 표준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2019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작 대상 표준계약서 사용 점검결과 빈번하게 지적된 사례

- 가)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제작스태프(보조 역할을 하는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함에도 표준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나) 보수(대금)의 총액과 지급기한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다) 보수(대금) 지급계좌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당 계좌의 예금주 기재가 누락된 경우
- 라)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4대 보험 체결의무 관련 조항(표준근로계약서 제4조)이 누락된 경우
- 마)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업체 자체의 임의양식을 사용하여 핵심권고조항이 다수 누락되어 있는 경우
- 바) 표준근로계약서의 보수란에 기준시급 기재가 누락된 경우

2)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구분	계약서	계약서 포함 필수조항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4조(프로그램), 제5조(제작비), 제7조(원고료·출연료 등 지급 보증), 제9조(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10조(프로그램 유통·이용), 제13조(방송자료 등의 지원), 제17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9조(책임의 귀속), 제22조(계약의 변경), 제23조(부당한 계약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제24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제4조(프로그램 구매내용), 제5조(구매금액의 산정 및 지급), 제6조(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제8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제15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제17조(책임의 귀속 및 제작 책임)
3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제2조(계약의 내용), 제3조(계약기간), 제4조(4대 보험 가입), 제5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제6조(스태프의 의무), 제7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제8조(역무제공 부당거래의 금지), 제9조(근로시간 및 휴가 등), 제10조(임금의 결정 지급), 제11조(임금의 직접청구), 제13조(권리의 귀속), 제14조(계약의 연장 및 변경),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8조(손해배상)

4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2조(계약의 내용), 제4조(스태프 임금 지급 보증), 제5조(계약의 변경), 제6조(하도급 대금), 제7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금지), 제9조(‘회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및 지시), 제11조(안전배려의 의무), 제12조(업무수행 및 검사), 제14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제15조(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제16조(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제17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8조(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제20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제22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제23조(손해배상)
5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업무위 탁계약서	제2조(계약의 내용), 제3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제4조(‘스태프’의 의무), 제5조(임금 지급 보증), 제6조(계약의 변경), 제8조(계약대금), 제11조(안전배려의 의무), 제12조(업무수행 및 검사), 제14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제15조(부당반품 및 역무제공 부당거부의 금지), 제16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7조(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제19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허락), 제21조(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제22조(손해배상)
6	방송작가 집필 표 준계약서	제3조(계약의 내용), 제4조(계약기간), 제5조(계약의 변경), 제6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제7조(‘작가’의 의무), 제10조(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제11조(부당한 원고 인도 거부 등의 금지), 제12조(원고료), 제13조(원고료 지급보증), 제15조(저작권), 제16조(프로그램의 2차 이용),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1조(손해배상)
7	대중문화예술인 방 송출연 표준계약서 (가수)	제4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제5조(가수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제6조(권리의 귀속), 제9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제12조(분쟁해결), 제14조(이행의 보증)
8	대중문화예술인 방 송출연 표준계약서 (배우)	제4조(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의무), 제5조(배우 및 매니지먼트사의 의무), 제6조(권리의 귀속), 제7조(계약의 불이행 및 촬영의 중단), 제8조(프로그램 출연회차 증감 및 내용의 변경),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제13조(분쟁해결), 제15조(이행의 보증)

3)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